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 2018년 상반기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1
2. 연구실 추가 및 명칭 변경	3
3. 2018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4
4.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7
5.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	8
6.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9
7.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12
8. 연구실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의 날 지정	16

안건 1) 2018년 상반기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규칙 별표 11의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 인자)]

□ 측정결과

○ 대상연구실

- 본원 : 농식품개발팀 분석실, 기후환경팀 식물영양분석실
- 버섯연구소

○ 현 황

- 농식품개발팀 분석실 : 가공제품의 식품영양 분석시 시약사용으로 인한 황산, 염화수소, 아세트니트릴에 노출
- 기후환경팀 식물영양분석실 : 토양의 잔류 농약 및 무기성분 분석시 시약 사용으로 인한 황산, 염화수소, 질산, 아세트니트릴, 메틸알코올에 노출
- 버섯연구소 재배이용실험실 : 황산, 디에틸에테르 노출

○ 결 과

- 농식품개발팀 및 기후환경팀 : 단일물질 불검출
- 기후환경팀 : 혼합유기화합물 기준이하 검출
- 버섯연구소 : 황산 불검출, 디에틸에테르 기준이하 검출

○ 대 책

- 공학적 대책
 - 각 분석실내에 설치된 국소배기설비(Fume Hood)를 적극적으로 활용
 - 국소배기설비에서 약품사용시 적정한 높이(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의 권고기준 약 10인치: 25cm 정도 권장)까지 문을 연 상태로 사용
- 관리적 대책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 관련 작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 화학물질은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도에 적합하도록 기존 MSDS를 GHS 양식에 맞게 변경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 ‘황산’ 을 취급 시 작업장 내 국소배기시설을 이용, 내산성 재질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 개인위생적 대책

-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세안 및 세척을 통해 피부에 남아있는 이물질 제거
- 착용했던 개인보호구는 별도의 보관함(밀폐)을 이용하여 기타오염물질 노출 예방

□ 후속조치

- 농식품개발팀 분석실 : 배기시설 설치 예정
- 해당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주의사항 공지

안건 2) 연구실 추가 및 명칭 변경

□ 근거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현 황

- 원예연구과 조직배양실 건립에 따른 연구실 증가

□ 안 건

- 기존 6개과소 26개 연구실 => 변경 6개과소 27개 연구실

과소명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원예연구과	원예생리연구실	홍승민	황규현
	원예연구실	홍승민	황규현
	조직배양실	홍승민	임성희

- 연안법에 의한 행정사항 일괄 조치 : 실험실 등록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 연구실 안전용품, 안전보건표지판, MSDS 비치 등

안건 3) 2018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 현 황

- 공무직 및 연구업무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지정

과소	총원	연구직	공무직
총원	65	29	36
작물과	13	6	7
원예과	7	3	4
환농과	24	10	14
버섯연구소	9	3	6
소득자원연구소	5	3	2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7	4	3

□ 안 건

- 분기별 연구활동종사자 지정을 통한 관리 체계 확립
 - 정기교육,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수 시간 준수
 - 기존 : 분기별 6시간
 - 신규 : 분기별 8시간

※ 참고 : 별지 1

<별지 1>

연구활동 종사자 및 대표 업무

과소	팀명	성명	직급	대표업무
작 물 연구과	작물육종	최병열	연구관	작물육종팀 업무 총괄 및 실험실 총괄
	작물육종	원태진	연구사	특수용도 벼 신품종 육종 및 실험실 안전관리
	작물육종	이유주	공무직	브랜드쌀 주요성분, 품종판별 등 분석기자재 운영 보조
	작물육종	임진영	공무직	벼 약배양 육종연구 보조, 약배양 계통 생육 및 기자재 운영 보조
	농식품개발	원선이	연구관	농식품가공연구실 총괄 및 농식품 성분 분석
	농식품개발	강희윤	연구사	양조 및 미생물 연구, 농식품가공연구실 시설 관리
	농식품개발	서재순	연구사	쌀가공품 성분 분석, 농식품가공연구실 시약 관리
	농식품개발	양희원	공무직	농산물 및 가공품 성분 분석 보조
	농식품개발	박우리	공무직	기능성 성분 및 향기 분석 보조
	농식품개발	김지현	공무직	기능성 성분 LC 분석 보조
	농식품개발	김진희	공무직	기능성 성분 GC 분석 보조
농식품개발	한나라	공무직	단백질 성분 분석 보조	
원 예 연구과	미래농업	이정혜	연구사	식물공장 내 생산식물 생육조사 및 기능성 성분분석
	미래농업	최숙영	공무직	식물공장 내 생산식물 생육조사 및 기능성 성분분석
	원예육종	홍승민	연구관	과수 신품종 육성을 위한 기능성 성분분석
	원예육종	황규현	연구사	장미 신품종 육성을 위한 생육조사 및 분자생물학적 시험 분석
	원예육종	김병순	공무직	과수 신품종 육성을 위한 기능성 성분분석
	원예육종	천성현	공무직	장미 분자생물학적 시험분석 보조
	원예육종	임성희	연구사	국화 조직배양실 관리
	원예육종	박미옥	공무직	조직배양실 시험분석 보조
환경농업 연구과	기후환경	박중수	연구관	기후환경 실험실 총괄
	기후환경	신민우	연구사	식물영양분석실 관리
	농업생물	이상우	연구관	농업생물 실험실 총괄
	농업생물	이영수	연구사	곤충생태실험실 관리
	농업생물	이현주	연구사	병원균진단실험실 관리
	농업생물	최종윤	연구사	병방제실험실 관리
	유기농업	임갑준	연구관	미생물 실험실 총괄
	유기농업	황지은	연구사	미생물 실험실 관리
	유기농업	이진구	연구사	곤충실험실 관리
	유기농업	윤승환	연구사	곤충사육실 관리
	기후환경	이연희	공무직	질소, 염분 분석
	기후환경	양미라	공무직	수질, 토양 인산 분석
	기후환경	은승우	공무직	농약잔류 분석
	기후환경	신미화	공무직	중금속 분석
	기후환경	유한나	공무직	양이온 분석
	기후환경	우혜진	공무직	수질, 토양 음이온 분석
	기후환경	홍은경	공무직	온실가스 분석
	기후환경	이해진	공무직	유기물 분석

과소	팀명	성명	직급	대표 업무
버섯연구소	육 종	이윤희	연구사	꽃송이버섯 계통 육성 및 야생버섯 활용 개발연구
		권희민	연구사	원형질체융합 기법을 이용한 품종 육성 및 꽃송이버섯 적합 배지 개발
	"	구옥	공무직	느타리버섯 육종 및 종균활력 연구, 꽃송이버섯 육종 연구보조
	"	홍혜정	공무직	잎새버섯 육종 및 재배기술 연구보조
	"	강인정	공무직	꽃송이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육종 연구보조
	재배이용	백일선	연구사	유용미생물 활용 버섯 재배법 개발
	"	정연순	공무직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 연구보조
	"	강영주	공무직	표고 육종 및 재배기술 연구보조
	"	최상분	공무직	가공품 개발 연구 및 오염 분석 업무보조
소득연	인삼연구	심상연	연구사	새싹삼 및 묘삼 생산연구
		김은주	공무직	인삼 연작장해 연구업무 보조
	"	조명숙	공무직	인삼 시설 재배 및 연작장해 연구 업무 보조
	"	한정아	연구사	인삼 토양병해 진단기술 연구
	작목개발	장은규	연구사	콩 신품종 육성 연구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	육 종	이재홍	연구사	비모란, 산취, 및 에케베리아 신품종 육성
	재배이용	이지영	연구사	개발선인장, 꽃기린 신품종 육성
	육 종	이지혜	연구사	칼랑코에 신품종 육성
	재배이용	정재홍	연구사	레브티아 신품종 육성, 선인장 조직배양기술 개발
	육 종	서유정	공무직	난류 신품종 조직배양 관리
	재배이용	이기분	공무직	에케베리아, 하월시아 조직배양 시험보조
	재배이용	유지현	공무직	접목선인장 조직배양 시험보조

안건 4)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근거법령

○ 연안법 제 5조의 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 건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번호	과소명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1	작물연구과	벼약배양실험실	최병열	원태진
2		쌀품질분석실	최병열	원태진
3		식품미생물연구실	원선이	강희윤
4		식품종합분석실	원선이	강희윤
5		기능성분석실	원선이	강희윤
6		저장연구실	원선이	강희윤
7	원예연구과	원예생리연구실	홍승민	황규현
8		원예연구실	홍승민	황규현
9		조직배양실	홍승민	임성희
10	환경농업연구과	식물영양분석실	박중수	신민우
11		곤충생태실험실	이상우	이영수
12		곤충행동분석실	이상우	이영수
13		해충발육실험실	이상우	이영수
14		곤충영상분석실	이상우	이영수
15		병원균진단실험실	이상우	이현주
16		병방제실험실	이상우	최종윤
17		미생물실험실	임갑준	황지은
18		곤충실험실	임갑준	윤승환
19	버섯연구소	원균관리실	이윤희	권희민
20		재배실험실	이용선	백일선
21		재배이용실험실	이용선	백일선
22		향온배양실	이윤희	권희민
23	소득자원연구소	품질분석실	박건환	한정아
24		환경분석실/시료준비실	박건환	한정아
25	선인장	육종연구실	이재홍	이지혜
26	다육식물	조직배양실	이재홍	이지혜
27	연구소	재배이용실험실	이지영	정재홍

안건 5)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사용 계획

□ 근거법령

- 연안법 제13조(비용의부담)
- 연안법 시행규칙 제 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 내 용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 연안법 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진단일시 : 10월중 예정
- 소요예산 : 금9,000,000원
- 산출내역 : 36연구실(본원 27, 연구소 9) 안전점검
※ 안전점검 일정 추후 협의

○ 작업환경 측정 및 노출도 평가

- 검진일시 : 8월 27일(예정)
- 소요예산 : 금2,400,000원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 연안법 시행규칙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 검진일시 : 10월 중순(예정)
- 소요예산 : 금2,000,000원
※ 특수건강검진 일정 변동 가능
※ 검진 대상자 단체 건강 검진 실시

○ 실험실 안전용품 비치

- 연안법 시행령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비의 계상
- 소요예산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정)
- 품 목 : 실험실 안전 물품 등

□ 안 건

- 예산 지출과 관련된 계획 토의 및 의결

안건 6)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 근거법령

- 연안법 시행규칙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 현 황

- 신규채용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전환자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 전환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 안 건

- 작업환경측정 대상 연구실 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 참고 : 별지 2

<별지 2>

시약취급 연구활동 종사자

과소	팀명	성명	직급	취급시약
작물연구과	작물육종	최병열	연구관	-
	작물육종	원태진	연구사	-
	작물육종	이유주	공무직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클로로포름
	작물육종	임진영	공무직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농식품개발팀	원선이	연구관	에탄올, 아세토나이트릴 등
	농식품개발팀	강희윤	연구사	에탄올
	농식품개발팀	서재순	연구사	황산, 염화수소, 붕산 등
	농식품개발팀	양희원	공무직	황산, 염화수소, 붕산, 에테르 등
	농식품개발팀	박우리	공무직	아세토나이트릴, 황산 등
	농식품개발팀	김지현	공무직	아세토나이트릴, 황산 등
	농식품개발팀	김진희	공무직	아세토나이트릴, 황산 등
	농식품개발팀	한나라	공무직	황산, 염화수소, 붕산, 에테르 등
원예연구과	미래농업팀	이정혜	연구사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미래농업팀	최숙영	공무직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원예육종팀	홍승민	연구관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토나이트릴
	원예육종팀	황규현	연구사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토나이트릴
	원예육종팀	김병순	공무직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토나이트릴
	원예육종팀	천성현	공무직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토나이트릴
	원예육종팀	임성희	연구사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원예육종팀	박미옥	공무직	염화수소, 메틸알콜, 아세톤
환경농업 연구과	기후환경	박종수	연구관	-
	기후환경	신민우	연구사	-
	농업생물	이상우	연구관	-
	농업생물	이영수	연구사	-
	농업생물	이현주	연구사	-
	농업생물	최종윤	연구사	-
	유기농업	임갑준	연구관	에탄올
	유기농업	황지은	연구사	에탄올
	유기농업	이진구	연구사	에탄올
	유기농업	윤승환	연구사	에탄올
	기후환경	이연희	공무직	황산, 인산
	기후환경	양미라	공무직	황산, 아세트산
	기후환경	은승우	공무직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기후환경	신미화	공무직	황산, 질산

과소	팀명	성명	직급	취급시약
환경농업 연구과	기후환경	유한나	공무직	황산, 염화수소
	기후환경	우혜진	공무직	황산, 염화수소
	기후환경	홍은경	공무직	황산, 염화수소
	기후환경	이해진	공무직	황산, 염화수소
	농업생물	이희아	공무직	에탄올
	농업생물	박지미	공무직	에탄올
	농업생물	박춘미	공무직	에탄올
	유기농업	김예경	공무직	에탄올
	유기농업	박귀자	공무직	에탄올
	유기농업	원근혜	공무직	에탄올
버섯연구소	육 종	이윤희	연구사	에탄올
	육 종	권희민	연구사	에탄올
	육 종	구옥	공무직	에탄올
	육 종	홍혜정	공무직	메탄올, 질산, 황산,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육 종	강인정	공무직	에탄올
	재배이용	백일선	연구사	에탄올
	재배이용	정연순	공무직	에탄올
	재배이용	강영주	공무직	에탄올, 에테르, 황산
소득자원 연구소	인삼연구	김은주	공무직	에탄올, 클로로포름, 이소아밀알코올, 수산화나트륨
	인삼연구	조명숙	공무직	에탄올, 클로로포름, 이소아밀알코올, 수산화나트륨
	인삼연구	한정아	연구사	에탄올, 클로로포름, 이소아밀알코올, 수산화나트륨
	작목개발	장은규	"	염화수소, 아세트나이트릴, 에탄올, 메탄올, 질산
	인삼연구	심상연	연구사	-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	육 종	이재홍	연구사	에탄올
	재배이용	이지영	연구사	에탄올
	육 종	이지혜	연구사	에탄올
	재배이용	정재홍	연구사	에탄올
	육 종	서유정	무기직	에탄올, 염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재배이용	이기분	무기직	에탄올
	재배이용	유지현	무기직	에탄올

안건 7)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 근거법령

- 연안법 제5조의 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개 요

- 각 연구실별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 실시

□ 안 건

-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 자료 업데이트 및 대장 비치
 - 9월까지 교육 및 입력 완료
 - 10월 연구실 안전의날 점검

※ 참고 : 별지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개인보호구 선정”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개선·홍보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의 연구·개발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및 방법

제5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제7조(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①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명
 2. 연구실명, 위치, 연락처 등 연구실 개요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정보
 4. 주요기관 등의 비상연락처
 5. 해당 연구실 전체 연구개발활동명(실험·실습/연구과제명)
 6. 연구활동종사자 및 주요 기자재 현황
 7.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
 8.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등의 보관 위치, 비상문 및 비상통로 등이 표시된 배치도
-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양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연구·실험·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기구 등 사용법 포함),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
 4.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별 (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 안전계획) 연구실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등을 위한 조치,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을 연구실 안전계획에 포함 시켜야 한다.

제10조(비상조치계획) 연구실책임자는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처리 절차 등을 비상조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등

제11조(보고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2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 분석(R&DSA)에 대하여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시작된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건 8) 연구실 안전 집합 교육 및 안전의 날 지정

- ◆ 연구실 안전의식 고취
- ◆ 연구실 안전의 날을 통해 연구실 점검 및 연구원 교육 실시

□ 근거법령

- 없음

□ 내 용

- 연구실 안전관리 집합 교육 실시
 - 연구실 전체 집합 교육 실시(9월중 추진 예정)

- 연구실 안전의날 지정(한달 1회 실시)
 - 연구실 안전 교육 실시(교육시간 확보 및 안전의식 고취)
 - 강의 자료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공동 제공
 - 강의 : 연구실책임자 진행

 - 연구실 안전 자체 점검 실시
 - 연구실 자체 안전 점검 및 1-2개 연구실 정밀 점검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및 연구실 책임자)

□ 안 건

- 연구실 안전관리 집합 교육 일정 및 교육내용